

2026년도 부산광역시체육회관 시설위탁관리 용역비

# 原價計算報告書

- 부산광역시체육회관 위촉 -

審理畢	
施行 : '25年 11月 日	



(사)한국발전연구원

KOREA INSTITUTE OF REGIONAL DEVELOPMENT

(48059)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90 센텀e큐비 7층  
TEL. (051) 637-6490, 637-6491 FAX. (051)637-6489

# 제 출 문

본 원가계산은 부산광역시체육회관의 위촉에 의하여 ‘2026년 부산광역시체육회관 시설위탁관리 용역비’에 대한 적정가격을 기획재정부 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전문분야의 책임연구원을 선임하고 시행한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2025년 11월

사단법인 한국발전연구원  
이사장 김길수

---

책임 연구원 : 강병국  
원가 산정사

## 원가계산결과표

( 단위 : 원 )

순번	구분	내용	적용인원(명)	비고
1	용역명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및 부산국제경기대회기념전시관 시설위탁 관리용역		주)참조
2	용역기간	2026. 1. 1 ~ 2026. 12. 31		
4	용역명	시설 관리	105,690,000	2명
		청소 관리	146,170,000	3명
		경비 관리	69,200,000	2명
		헬스장관리	29,340,000	1명
		계	350,400,000	8명

# 용역원가계산서 ( 1년간 총합 )

品名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시설관리용역

規格 : 1년간 총합

單位 : 1개월, 1년간

비 목	구 分	1년간 총 금액	구성비	1개월 금액	비 고
용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등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小 計		0.00%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272,453,652		22,704,471
		小 計	272,453,652	90.52%	22,704,471
역원가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ガ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708,356		59,030
			26,854,548		2,237,879
			962,988		80,249
		小 計	28,525,892	9.48%	2,377,158
		용역원가	300,979,544	100.00%	25,081,629
		일반관리비(3.0)%	9,084,132		757,011
		이윤(2.14)%	6,674,400		556,200
		총원가	318,563,484		26,546,957
		부가가치세(10)%	31,856,328		2,654,694
		계	350,400,000		29,200,000
KIRD 57 - 2					

# 용 역 원 가 계 산 서 ( 용역별 )

品名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시설관리용역

規格 : 1년간 총합(용역별)

單位 : 1개월, 1년간

구 분		시설관리	청소관리	경비관리	헬스장관리	합계	
비 목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등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용역원가	재료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82,307,592	113,749,992	53,680,632	22,715,436	272,453,652
		小計	82,307,592	113,749,992	53,680,632	22,715,436	272,453,652
		노무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ガ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213,996	295,740	139,560	59,060	708,356
		8,043,432	11,185,176	5,408,784	2,217,156	26,854,548	
		213,996	321,000	213,996	213,996	962,988	
		551,460	762,120	359,652	152,184	1,825,416	
		小計	9,022,884	12,564,036	6,121,992	2,642,388	30,351,300
		용역원가	91,330,476	126,314,028	59,802,624	25,357,824	302,804,952
		일반관리비 (3.0)%	2,739,912	3,789,420	1,794,072	760,728	9,084,132
		이윤 (2.14)%	2,013,096	2,784,204	1,318,164	558,936	6,674,400
		총원가	96,083,484	132,887,652	62,914,860	26,677,488	318,563,484
		부가가치세 (10)%	9,608,340	13,288,764	6,291,480	2,667,744	31,856,328
계		105,690,000	146,170,000	69,200,000	29,340,000	350,400,000	

# 조사개요

# 조 사 개 요

## 1. 목 적

본 원가계산은 부산광역시체육회관의 위촉에 의하여 ‘2026년 부산광역시체육회관 시설위탁관리 용역비’에 대한 적정원가를 기획재정부 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조사 회보함으로써 합리적인 계약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원가계산의 전제

### 가. 원가계산의 시행근거

본 원가계산은 부산광역시체육회관의 위촉에 의하여 시행하였다.

### 나. 원가계산의 기간

2025. 11. 19. ~ 2025. 11. 24.

### 다. 원가계산의 대상품목

‘2026년 부산광역시체육회관 시설위탁관리 용역비’

## 3. 원가계산의 방법

본 원가계산은 의뢰 부서에서 제시된 작업지시서 와 수리공사 가능한 업체의 공사방법 등을 조사 분석한 자료를 참고하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분 산출하였다.

## **가. 재료비**

재료비는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 **나. 노무비**

노무비는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 **1) 직접 노무비**

직접 노무비는 노무공수에 임율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가) 노무공수 : 작업지시서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나) 임율 : 2025년도 하반기 제조노임단가를 기본급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상여금, 퇴직급여(1/12)을 합산한 금액을 근로 기준법에 의거,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임율을 산출하였다.

### **2) 간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 **다. 경비**

경비의 산출 방법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한국은행 발간 '24년 기업경영분석(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소기업)”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비율 배분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 **1) 비율 배부 방법**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세금과 공과는 발생된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계액에 산출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였으며, 보험료 및 복리후생비 노무비에 산출된 비율을 곱하였고, 안전관리비는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합계액에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 **라. 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한국은행 발간 '24년 기업경영분석(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소기업)”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였으나, 본 원가계산에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하고 전년도 적용비율 3%, 2.14%를 각각 적용 산출하였으며, 외주 가공비는 이윤에서 제외 산출하였다.

### **4. 조사의 결론**

본 원가계산의 결과는 첨부된 원가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여러 가지 여건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아래와 같은 제반여건의 변동이 발생 시에는 가격의 변동이 수반되므로 조사가격은 재조정되어야한다.

#### **가. 작업지시서의 변동**

#### **나. 재료비 및 노임단가의 변동**

#### **다. 용역 전문 업체의 조업도의 변동**

#### **라. 기타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여건의 변동**

# 시설 관리

# 시설 관리

# 용역원가계산서

품명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시설관리용역

규격 : 시설 관리

단위 : 1개월, 1년간

비 목		구 分	금 액	구성비	1년간 금액	비 고
용 역 원 가 비	재 료 비	직접재료비	불인정			
		간접재료비	불인정			
		작업부산물등	불인정			
	小 計			0.00%		
	노 무 비	직접노무비	6,858,966		82,307,592	
		간접노무비				
		小 計	6,858,966	90.12%	82,307,592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ガ상각비				
		수리수선비	17,833		213,996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670,286		8,043,432	
		복리후생비	17,833		213,996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5,955		551,460	
		소모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小 計		751,907	9.88%	9,022,884	
용역원가		7,610,873	100.00%		91,330,476	
일반관리비(3.0)%		228,326			2,739,912	재.노.경 * 3%
이윤(2.14)%		167,758			2,013,096	외주가공비 제외
총원가		8,006,957			96,083,484	
부가가치세(10)%		800,695			9,608,340	총원가*10%
계		8,800,000			105,690,000	천원단위 이하 절사

## 직 접 노 무 비 산 출 명 세 서

품 명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시설관리용역

공 종	적용직종	인원	임금	금 액	비 고
전기기계시설관리	전기기능사	1	3,880,655	3,880,655	전기, 기계시설관리, 조경관리포함
전기기계시설관리	전자제품조립원	1	2,978,311	2,978,311	전기, 기계시설관리, 조경관리포함
계		2		6,858,966	임금 = 직종별 임율산출표 참조

## 직 종 별 임 율 산 출 표

품 명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시설관리용역

직 책	적용직종	기본일급	기본월급	연장근무 수당	휴일근무 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85.00%)	퇴직급여 총당금 (100%)	합 계
전기기계시설관리	전기기능사	128,287	3,335,462			11,289	236,261	297,643	3,880,655
전기기계시설관리	전자제품조립원	95,832	2,491,632			87,846	176,490	222,343	2,978,311
계									6,858,966

1. 적용직종 및 기본일급: 2025년도 하반기 제조노임 적용
2. 기본급: 26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 주 만근시 1일 유급휴일 적용)
3. 상여금 : 기본급의 연85.0% 적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예정가격작성준칙 참고적용)
4. 퇴직급여총당금 : 기본급 + 상여금의 연70% 적용 근로기준법 제34조
5. 연차수당 : 일급 \* 11일 ÷ 12개월 (년11일 , 366일 부터 15일 적용 대법판례 및 근로기준 법 제60조)

경 비 명 세 서

품 명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시설관리용역

#### 주)1. 경비산출표 참조

## 2. 각항목별 산출 명세표 참조.

## 보험료산출명세서

순번	구 분	임금(원)	적용요율(%)	금 액	비고	
1	산재보험료	6,338,980	0.86	54,515	〈산재보험법 적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의거 8.0/1000 적용+0.6/1000(통상출퇴근요율)	
					대상금액: 보험료산출 명세서 참조	
2	국민연금	6,338,980	4.50	285,254	〈국민연금법 적용〉	
					· 국민연금법 제88조에 의거 45/1000 적용	
					대상금액: 보험료산출 명세서 참조	
3	건강보험료	6,338,980	3.545	224,716	〈건강보험법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에 의거 35.45/1000 적용	
					대상금액: 보험료산출 명세서 참조	
4	고용보험료	6,338,980	1.15	72,898	〈고용보험법 적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실업급여 0.9%, 150인 미만기업 0.25%	
					대상금액: 보험료산출 명세서 참조	
5	노인장기요양보험	224,716	12.95	29,10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건강	
					대상금액: 보험료산출 명세서 참조	
6	임금채권보장보험	6,338,980	0.06	3,803	〈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적용〉	
					· 임금채권 보장법 제9조, 고용노동부	
					대상금액: 보험료산출 명세서 참조	
소 계				670,286	1개월분임	
합 계				8,043,432	1년분 합계	

## 복리후생비 산출명세서

순번	구 分		산 출 근 거			금 액	비 고
			단 가	적용인원	적용횟수		
1	피복비(동복)	연1벌	65,000	2	1	130,000	25년 물가정보 12월호 II-87 페이지 참조
2	피복비(하복)	연1벌	42,000	2	1	84,000	25년 물가정보 12월호 II-87 페이지 참조
3	중식보조금	월1회	110,000	2	0	0	일선청사구내식당기준 5,000*22일=110,000원
4	교통비	월1회	68,200	2	0	0	일반버스:1,550원*왕복 3,100*22일=68,200원
소 계						214,000	1년간분
합 계						17,833	1개월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명세서 (중대재해처벌법 사전 관리비용)

품명	재료비+직노비	적용율(%)	산출금액	5억 이하 기초금액	년간적용금액	월 적용금액	비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2,307,592	0.67%	551,461	해당없음	551,460	45,955	주) 참조
계						45,955	
주)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기준표 참조 2. 재료비 + 직노비 : 용역원가계산서 참조 3. 년간적용금액 : (재료비+직노비) * 적용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기준표 참조) 4. 년간 적용금액 : 월 적용금액 * 12개월 5. 월 적용금액 :(산출금액+5억이상기초금액) ÷ 12개월							

0

# 청소 관리

# 용역원가계산서

품명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시설관리용역

규격 : 청소 관리

단위 : 1개월, 1년간

비 목		구 分	금 액	구성비	1년간 금액	비 고
용 역 원 가 비	재 료 비	직접재료비	불인정			
		간접재료비	불인정			
		작업부산물등	불인정			
	小 計			0.00%		
	노 무 비	직접노무비	9,479,166		113,749,992	
		간접노무비				
		小 計	9,479,166	90.05%	113,749,992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ガ상각비				
		수리수선비	24,645		295,740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932,098		11,185,176	
		복리후생비	26,750		321,000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3,510		762,120	
		소모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小 計		1,047,003	9.95%	12,564,036	
용역원가		10,526,169	100.00%		126,314,028	
일반관리비(3.0)%		315,785			3,789,420	재.노.경 * 3%
이윤(2.14)%		232,017			2,784,204	외주가공비 제외
총원가		11,073,971			132,887,652	
부가가치세(10)%		1,107,397			13,288,764	총원가*10%
계		12,181,360			146,170,000	천원단위 이하 절사

## 직 접 노 무 비 산 출 명 세 서

품 명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시설관리용역

공 종	적용직종	인원	임금	금 액	비 고
청소 및 감독	단순노무종사원	1	3,121,876	3,121,876	내외부 청소작업 및 관리감독
청소작업자	단순노무종사원	2	3,178,645	6,357,290	내외부 청소작업 및 관리감독보조
계		3		9,479,166	임금 = 직종별 임율산출표 참조

## 직종별 임율 산출표

품명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시설관리용역

직책	적용직종	기본일급	기본월급	연장근무 수당	명절,공휴일 순환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150%)	퇴직급여 총 당금 (100%)	합계
청소 및 감독	단순노무종사원	90,830	2,361,580	160,441		83,261	295,197	221,398	3,121,876
청소작업자	단순노무종사원	90,830	2,361,580	160,441	56,769	83,261	295,197	221,398	3,178,645
계									6,300,521

1. 적용직종 및 기본일급: 2025년도 하반기 제조노임 단가 적용
2. 기본급: 26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 주 만근시 1일 유급휴일 적용)
3. 상여금 : 기본급의 연150% 적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예정가격작성준칙 참고적용)
4. 퇴직급여총당금 : 기본급 + 상여금의 연100% 적용 근로기준법 제34조
5. 연장근무수당 : 시급 \* 근무시간 \* 일수 \* 150% 근로기준법 제56조 ( 월 30.4일 ÷ 7일 = 4.34 ÷ 3명 = 1.45일 근무/월 1인당)  
 근무시간 : 07:00 ~ 16:00 = 9시간 중 1시간 점심 휴게시간 제외 8시간 근무
6. 명절순환근무 : 일급 \* 15일(명절,공휴일 15일 경비관리 근무표참조) \*150% ÷ 12개월 ÷ 3명(순환근무)
7. 연차수당 : 일급 \* 11일 ÷ 12개월 (년11일, 366일 부터 15일적용 대법판례 및 근로기준 법 제60조)

# 경 비 명 세 서

품 명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시설관리용역

### 주)1. 경비산출표 참조

## 2. 각항목별 산출 명세표 참조.

## 보험료산출명세서

순번	구 분	임금(원)	적용요율(%)	금 액	비고
1	산재보험료	8,814,972	0.86	75,808	<p>〈산재보험법 적용〉</p> <p>·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의거 8.0/1000 적용+0.6/1000(통상출퇴근요율)</p> <p>대상금액: 보험료산출 명세서 참조</p>
2	국민연금	8,814,972	4.50	396,673	<p>〈국민연금법 적용〉</p> <p>· 국민연금법 제88조에 의거 45/1000 적용</p> <p>대상금액: 보험료산출 명세서 참조</p>
3	건강보험료	8,814,972	3.545	312,490	<p>〈건강보험법 적용〉</p> <p>·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에 의거 35.45/1000 적용</p> <p>대상금액: 보험료산출 명세서 참조</p>
4	고용보험료	8,814,972	1.15	101,372	<p>〈고용보험법 적용〉</p> <p>·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실업급여 0.9%, 150인 미만기업 0.25%</p> <p>대상금액: 보험료산출 명세서 참조</p>
5	노인장기요양보험	312,490	12.95	40,467	<p>〈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p> <p>·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건강</p> <p>대상금액: 보험료산출 명세서 참조</p>
6	임금채권보장보험	8,814,972	0.06	5,288	<p>〈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적용〉</p> <p>· 임금채권 보장법 제9조, 고용노동부</p> <p>대상금액: 보험료산출 명세서 참조</p>
소 계				932,098	1개월분임
합 계				11,185,176	1년분 합계

## 복리후생비 산출명세서

순번	구 分		산 출 근 거			금 액	비 고
			단 가	적용인원	적용횟수		
1	피복비(동복)	연1벌	65,000	3	1	195,000	25년 물가정보 12월호 II-87 페이지 참조
2	피복비(하복)	연1벌	42,000	3	1	126,000	25년 물가정보 12월호 II-87 페이지 참조
3	중식보조금	월1회	110,000	3	0	0	일선청사구내식당기준 5,000*22일=110,000원
4	교통비	월1회	68,200	3	0	0	일반버스: 1,550원*왕복 3,100*22일=68,200원
소 계						321,000	1년간분
합 계						26,750	1개월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명세서 (중대재해처벌법 사전 관리비용)

품명	재료비+직노비	적용율(%)	산출금액	5억 이하 기초금액	년간적용금액	월 적용금액	비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3,749,992.00	0.67%	762,125	해당없음	762,120	63,510	주) 참조
계						63,510	
주)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기준표 참조 2. 재료비 + 직노비 : 용역원가계산서 참조 3. 년간적용금액 : (재료비+직노비) * 적용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기준표 참조) 4. 년간 적용금액 : 월 적용금액 * 12개월 5. 월 적용금액 :(산출금액+5억이상기초금액) ÷ 12개월							

# 경비 관리

# 용역원가계산서

품명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시설관리용역

규격 : 경비 관리

단위 : 1개월, 1년간

비 목		구 分	금 액	구성비	1년간 금액	비 고
용 역 원 가 비	재 료 비	직접재료비	불인정			
		간접재료비	불인정			
		작업부산물등	불인정			
	小 計			0.00%		
	노 무 비	직접노무비	4,473,386		53,680,632	
		간접노무비				
		小 計	4,473,386	89.76%	53,680,632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ガ상각비				
		수리수선비	11,630		139,560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450,732		5,408,784	
		복리후생비	17,833		213,996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9,971		359,652	
		소모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小 計		510,166	10.24%	6,121,992	
용역원가		4,983,552	100.00%		59,802,624	
일반관리비(3.0)%		149,506			1,794,072	재.노.경 * 3%
이윤(2.14)%		109,847			1,318,164	외주가공비 제외
총원가		5,242,905			62,914,860	
부가가치세(10)%		524,290			6,291,480	총원가*10%
계		5,767,190			69,200,000	천원단위 이하 절사

## 직 접 노 무 비 산 출 명 세 서

품 명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시설관리용역

공 종	적용직종	인원	임금	금 액	비 고
경비관리및책임자	단순노무종사원	1	3,015,869	3,015,869	전체경비관리 및 주차관리책임
경비관리및책임자	단순노무종사원	1	1,457,517	1,457,517	전체경비관리 및 주차관리책임
계		2		4,473,386	임금 = 직종별 임율산출표 참조

## 직 종 별 임 율 산 출 표

품 명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시설관리용역

직 책	적용직종	기본일급	기본월급	토,일요일 근무수당	명절,공휴일 근무수당	연차수당	상여금(85%)	퇴직급여 총당 금 (100%)	합 계
경비관리및책임자	단순노무종사원	90,830	2,361,580		193,013	83,261	167,278	210,738	3,015,869
경비관리및책임자 토일 주 2일근무	단순노무종사원	90,830		1,181,244	193,013	83,261	-	-	1,457,517
계									4,473,386

1. 적용직종 및 기본일급: 2025년도 하반기 제조노임 단가 적용
2. 기본급: 26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 주 만근시 1일 유급휴일 적용)
3. 상여금 : 기본급의 연85.0% 적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예정가격작성준칙 참고적용)
4. 퇴직급여총당금 : 기본급 + 상여금의 연50% 적용 근로기준법 제34조
5. 연장근무수당 : 시급 \* 근무시간 \* 일수 \* 150%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무시간 : 17:30 ~ 익일08:30 = 15시간 중 휴게시간 8시간 제외 7시간 근무로 일근으로 계산 함.
6. 토일 주 2일근무자 : 365일 ÷ 7일 = 52.14주 ÷ 12개월 = 4.34주/월 \* 2일근무 = 8.67/월 근무일수
7. 연차수당 : 일급 \* 11일 ÷ 12개월 (년11일, 366일부터 15일 적용 대법판례 및 근로기준법 제60조)
8. 명절,공휴일근무일수 : 17일 (첨부 1참조) ÷ 12개월 = 1일/월평균 1일근무
9. 명절,공휴일근무수당 : 일급 \* 150% (근로기준법 제56조)
10. 토,일요일근무일수 : 104일 (첨부 1참조) ÷ 12개월 = 8.67일/월평균 근무
11. 토,일요일근무수당 : 일급 \* 150% (근로기준법 제56조)

# 2026년 근무일수 및 휴무일수 명절 공휴일 조사표

(첨부 1)

구분	월 기준일수	근무일수	휴무일수				비 고(공휴일)
			계	토요일	일요일	명절,공휴일	
2026.1월	31	21	10	5	4	1	신정
2월	28	17	11	4	4	3	구정
3월	31	21	10	4	5	1	삼일절(대체휴일)
4월	30	22	8	4	4	0	
5월	31	19	12	5	5	2	근로자의날, 석가탄신일
6월	30	21	9	4	4	1	현충일
7월	31	23	8	4	4	0	
8월	31	19	12	5	5	2	광복절(대체휴일)
9월	30	19	11	4	4	3	추석
10월	31	19	12	5	4	3	개천절(대체휴일), 한글날
11월	30	21	9	4	5	0	
12월	31	22	9	4	4	1	성탄절
합 계	365	244	121	52	52	17	

주1) 2026년 달력 기준 조사표 임.

주2) 토,일요일 근무일수 :  $(52+52) = 104$ 일

주3) 명절,공휴일 근무일수 : 17일

# 경 비 명 세 서

품 명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시설관리용역

#### 주)1. 경비산출표 참조

## 2. 각항목별 산출 명세표 참조.

## 보험료산출명세서

순번	구 분	임금(원)	적용요율(%)	금 액	비고
1	산재보험료	4,262,648	0.86	36,658	<p>〈산재보험법 적용〉</p> <p>·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의거 8.0/1000적용+0.6/1000(통상출퇴근요율)</p> <p>대상금액: 보험료산출 명세서 참조</p>
2	국민연금	4,262,648	4.50	191,819	<p>〈국민연금법 적용〉</p> <p>· 국민연금법 제88조에 의거 45/1000 적용</p> <p>대상금액: 보험료산출 명세서 참조</p>
3	건강보험료	4,262,648	3.545	151,110	<p>〈건강보험법 적용〉</p> <p>·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에 의거 35.45/1000 적용</p> <p>대상금액: 보험료산출 명세서 참조</p>
4	고용보험료	4,262,648	1.15	49,020	<p>〈고용보험법 적용〉</p> <p>·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실업급여 0.9%, 150인 미만기업 0.25%</p> <p>대상금액: 보험료산출 명세서 참조</p>
5	노인장기요양보험	151,110	12.95	19,568	<p>〈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p> <p>·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건강</p> <p>대상금액: 보험료산출 명세서 참조</p>
6	임금채권보장보험	4,262,648	0.06	2,557	<p>〈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적용〉</p> <p>· 임금채권 보장법 제9조, 고용노동부</p> <p>대상금액: 보험료산출 명세서 참조</p>
소 계				450,732	1개월분임
합 계				5,408,784	1년분 합계

## 복리후생비 산출명세서

순번	구 分		산 출 근 거			금 액	비 고
			단 가	적용인원	적용횟수		
1	피복비(동복)	연1벌	65,000	2	1	130,000	25년 물가정보 11월호 II-87 페이지 참조
2	피복비(하복)	연1벌	42,000	2	1	84,000	25년 물가정보 11월호 II-87 페이지 참조
3	중식보조금	월1회	110,000	2	0	0	일선청사구내식당기준 5,000*22일=110,000원
4	교통비	월1회	68,200	2	0	0	일반버스:1,550원*왕복 3,100*22일=68,200원
소 계						214,000	1년간분
합 계						17,833	1개월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명세서 (중대재해처벌법 사전 관리비용)

품명	재료비+직노비	적용율 (%)	산출금액	5억 이하 기초금액	년간적용금액	월 적용금액	비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3,680,632.00	0.67%	359,660	해당없음	359,652	29,971	주) 참조
계						29,971	
<b>주)</b> 1. 건설산업안전기본법 기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제2022-82호 2023.01.01 기준 적용 2. 재료비 + 직노비 : 용역원가계산서 참조 3. 년간적용금액 : (재료비+직노비) * 적용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기준표 참조) 4. 년간 적용금액 : 월 적용금액 * 12개월 5. 월 적용금액 :(산출금액+5억이상기초금액) ÷ 12개월							

# 헬스장 관리

# 용역원가계산서

품명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시설관리용역

규격 : 헬스장관리

단위 : 1개월, 1년간

비 목		구 分	금 액	구성비	1년간 금액	비 고
용 역 원 가 비	재 료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등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비	小 計		0.00%		
	노 무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1,892,953		22,715,436	
	비	小 計	1,892,953	89.58%	22,715,436	
	경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ガ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4,922  184,763 17,833  12,682		59,060  2,217,156 213,996  152,184	
	비	小 計	220,199	10.42%	2,642,388	
	용역원가		2,113,152	100.00%	25,357,824	
	일반관리비(3.0)%		63,394		760,728	재.노.경 * 3%
	이윤(2.14)%		46,578		558,936	외주가공비 제외
	총원가		2,223,124		26,677,488	
	부가가치세(10)%		222,312		2,667,744	총원가*10%
계			2,445,436		29,340,000	천원단위 이하 절사

## 직 접 노 무 비 산 출 명 세 서

품 명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시설관리용역

공 종	적용직종	인원	임금	금 액	비 고
헬스장관리 월~금 근무(3시간)	단순노무종사원	1	-	-	전체안내관리 및 책임자
헬스장접수관리 월~토 근무(5시간)	단순노무종사원	1	1,892,953	1,892,953	헬스장접수 및 안내관리책임자
계		2		1,892,953	임금 = 직종별 임율산출표 참조

## 직 종 별 임 율 산 출 표

품 명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시설관리용역

직 책	적용직종	기본일급	기본월급	연장근무 수당	휴일근무 수당	특별수당	상여금 (150%)	퇴직급여 총당 금 (100%)	합 계
헬스장관리 월~금 근무(3시간)	단순노무종사원		—				—	—	—
헬스장접수관리 월~토 근무(5시간) 휴게시간 30분	단순노무종사원	90,830	1,553,193				194,149	145,611	1,892,953
계									1,892,953

1. 적용직종 및 기본일급: 2025년도 하반기 제조노임 단가 적용
2. 기본급: 30.4일 기준 근무시간 4.5시간/일(근로기준법 제55조 주 만근시 1일 유급휴일 적용)  
 월 ~토 근무 주6일 + 1유급 = 7일/주 , 월 30.4일 근무  
 ※ 시급 \* 근무시간 \* 30.4일 ( 4.5시간근무 = 시급\*4.5시간\*30.4일 )
3. 상여금 : 기본급의 연150.0% 적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예정가격작성준칙 참고적용)
4. 퇴직급여총당금 : 기본급 + 상여금의 연100% 적용 근로기준법 제34조

## 경비명세서

품명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시설관리용역

비 목 별	소요금액	직접계산금액	합 계 액	12개월합계액	비 고
전 력 비					
수 도 광 열 비					
운 반 비					
감 가 상 각 비					
수 리 수 선 비	4,921.68		4,921.68	59,060.00	주)1
특허권 사용료					
기 술 료					
연 구 개 발 비					
시 험 검 사 비					
지 급 임 차 료					
보 험 료		184,763.00	184,763.00	2,217,156.00	주)2
복 리 후 생 비		17,833.00	17,833.00	213,996.00	주)2
보 관 비					
외 주 가 공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682.00		12,682.00	152,184.00	주)2
소 모 품 비					
여비교통통신비					
세 금 과 공 과					
폐기물 처리비					
도 서 인 쇄 비					
지 급 수 수 료					
기타 법정 경비					
			220,199.00	2,642,396.00	

주)1. 경비산출표 참조

2. 각항목별 산출 명세표 참조.

## 보 험 료 산 출 명 세 서

순번	구 분	임금(원)	적용요율(%)	금 액	비고
1	산재보험료	1,747,342	0.86	15,027	<p>〈산재보험법 적용〉</p> <p>·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의거 8.0/1000 적용+0.6/1000(통상출퇴근요율)</p> <p>대상금액: 보험료산출 명세서 참조</p>
2	국민연금	1,747,342	4.50	78,630	<p>〈국민연금법 적용〉</p> <p>· 국민연금법 제88조에 의거 45/1000 적용</p> <p>대상금액: 보험료산출 명세서 참조</p>
3	건강보험료	1,747,342	3.545	61,943	<p>〈건강보험법 적용〉</p> <p>·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에 의거 35.45/1000 적용</p> <p>대상금액: 보험료산출 명세서 참조</p>
4	고용보험료	1,747,342	1.15	20,094	<p>〈고용보험법 적용〉</p> <p>·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실업급여 0.9%, 150인 미만기업 0.25%</p> <p>대상금액: 보험료산출 명세서 참조</p>
5	노인장기요양보험	61,943	12.95	8,021	<p>〈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p> <p>·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건강</p> <p>대상금액: 보험료산출 명세서 참조</p>
6	임금채권보장보험	1,747,342	0.06	1,048	<p>〈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적용〉</p> <p>· 임금채권 보장법 제9조, 고용노동부</p> <p>대상금액: 보험료산출 명세서 참조</p>
소 계				184,763	1개월분임
합 계				2,217,156	1년분 합계

## 복리후생비 산출명세서

순번	구 分		산 출 근 거			금 액	비 고
			단 가	적용인원	적용횟수		
1	피복비(동복)	연1벌	65,000	2	1	130,000	25년 물가정보 11월호 II-87 페이지 참조
2	피복비(하복)	연1벌	42,000	2	1	84,000	25년 물가정보 11월호 II-87 페이지 참조
3	중식보조금	월1회	110,000	2	0	0	일선청사구내식당기준 5,000*22일=110,000원
4	교통비	월1회	68,200	2	0	0	일반버스:1,550원*왕복 3,100*22일=68,200원
소 계						214,000	1년간분
합 계						17,833	1개월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명세서 (중대재해처벌법 사전 관리비용)

품명	재료비+직노비	적용 율(%)	산출금액	5억 이하 기초금 액	년간적용금액	월 적용금액	비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715,436.00	0.67%	152,193	해당없음	152,184	12,682	주) 참조
계						12,682	

주) 1. 공연·청소 등 기타 도급·용역·위탁사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기준은 없으나, 타지자체의 기준 적용  
 2. 고용노동부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참조  
 3.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참조  
 4. 적용요율 = (시설관리업 산재보험요율 ÷ 건설업산재보험요율) × 건설공사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 산출근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기준표

구 분	요율(%)	비 고
	주 1)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0.80%	주2)
"	3.50%	"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2.93%	주3)
<b>적 용 요율</b>	<b>0.67%</b>	주4)

- 주) 1. 공연·청소 등 기타 도급·용역·위탁사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기준은 없으나, 타지자체의 기준 적용  
 2. 고용노동부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참조  
 3.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참조  
 4. 적용요율 = (시설관리업 산재보험요율 ÷ 건설업산재보험요율) × 건설공사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경 비 산 출 표

( 三 1 )

### 규격 : 헬스장관리

주) 경비 배부율 산출표(표 2) 참조

## 경비 배부율 산출표

( 표 2 )

< 단위 : 백만원 >

비 목	구 분 발생액	배부방법, 배부율		
		재료비+노무비	재료비	노무비
재 료 비	692,679			
노 무 비	8,687,068			
재료비 + 노무비	9,379,747			
경비	전 력 비			
	수 도 광 열 비			
	운 반 비			
	감 가 상 각 비			
	수 리 수 선 비	24,685	0.26%	
	특허권 사용료			
	기 술 료			
	연 구 개 발 비			
	시 험 검 사 비			
	지 급 임 차 료			
	보 협 료			
	복 리 후 생 비			
	보 관 비			
	외 주 가 공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 모 품 비			
	여비교통통신비			
	세 금 과 공 과			
	폐기물 처리비			
	도 서 인 쇄 비			
	지 급 수 수 료			
	기타 법정 경비			

주) 한국은행 발간 '24년 기업경영분석(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경비조정액명세표

(표 3)

< 단위 : 백만원 >

비 목	구 分	발 생 액	조정내역	조정후금액	적용 과목
용 역 경 비	전 력 비	80,613	불 인 정		전 력 비
	수 도 광 열 비	46,417	불 인 정		가스수도비
	운 반 비	147,311	불 인 정		운반·하역·보관·포장비
	감 가 상 각 비	340,164	직접계산		감가상각비
	수 리 수 선 비	82,284	30%	24,685	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 술 료				
	연 구 개 발 비	7,495	불 인 정		경상개발비
	시 험 검 사 비				
	지 급 임 차 료	271,057	불 인 정		임차료
	보 협 료	207,871	직접계산		보 협 료
	복 리 후 생 비	577,583	직접계산		복리후생비
	보 관 비				
	외 주 가 공 비	1,361,967	직접계산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 모 품 비				
	여비교통통신비				
	세 금 과 공 과	120,577	불 인 정		세금과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 서 인 쇄 비				
	지 급 수 수 료				
	기타 법정 경비	3,461,890	불 인 정		기타경비

주) 한국은행 발간 '24년 기업경영분석(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소기업)

## 일반관리비율산출표

(표 4)

<단위 : 백만원>

비 목	구 分	금 액	비 율 (%)	비 고
1.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43,987,260		
접 대 비		426,396		
광 고 선 전 비		791,716		
대 손 상 각		109,160		
기 타				
2. 적용 일반관리비		42,659,988		
3. 매 출 원 가		21,311,202		
4. 일반관리비 발생율			200.18%	
5. 회계예규에의한상한선			9%	
6. 적용 비 율			3%	

- 주) 1. 일반관리비=판매비와 일반관리비-(접대비+광고선접비+대손상각등)  
 2.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 매출원가 × 100  
 3. 한국은행 발간 '24년 기업경영분석(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이 윤 율 산 출 표

(표 5)

<단위 : 백만원>

비 목	구 分	금 액	비 율 (%)	비 고
1. 매 출 원 가		21,311,202		
일 반 관 리 비		42,659,988		
재 료 비 (-)	692,679			
소 계		63,278,511		
2. 영 업 손 익		1,450,626		
3. 이 윤 발 생 율			2.29%	
4. 회계예규에의한상한선			10%	
5. 적 용 비 율			2.14%	

주) 1. 이윤율 = 영업이익 / ( 매출원가 + 일반관리비 - 재료비 ) X 100

2. 한국은행 발간 '24년 기업경영분석(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소기업)

# 첨부자료

## 『부산광역시체육회관』

# 시설위탁관리 원가분석용역 작업지시서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원가분석의 목적은『부산광역시체육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 시설 위탁관리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설계(기초)가격 산출, 시설관리범위 산정, 종사자 자격요건 지정, 분야별 관리인원 산정, 기본장비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원가분석기간) 원가분석기간은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3조(원가분석 대상 및 기준) ① 원가분석대상은 회관으로 하며 세부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체육회관 현황

1. 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2. 대상

가. 대지 및 건물

구 분	연면적(m <sup>2</sup> )	주 요 시 설 내 용
총 계	10,761.86	
지하1층	2,737.45	주차장(지하 78면 /지상 10면), 수장고, 기계실, 전기실 등
1층	2,144.31	부산국제경기대회기념전시관(2002AG, WC, FG등), 부산스포츠과학센터, 자료실, 체육회 실업팀 관리 단장실
2층	1,306.94	대회의실, 중회의실, 스포츠헬스케어센터, 회원종목단체통합사무실
3층	1,323.42	회원종목단체사무실, 헬스장, 샤워실 등 (301보디빌딩, 302인라인롤러, 303골프, 304복싱, 305산악, 306우슈, 307볼링1)
4층	2,078.50	회원종목단체사무실, 실내훈련장, 통신실 (401핸드볼, 402수상스키, 403스키, 404야구소프트볼, 405철인3종, 406 빙상, 408농구)
5층	630.76	체육회 사무처, 회원종목단체사무실(501태권도)
6층	540.48	체육회 사무처

나. 기 타 : 부대 구축물(설비) 및 부속시설물 일체

다. 세부시설현황 : 붙임 참조

라. 계약기간 및 근무인원

- 계약기간 : 2026. 1. 1. ~ 2026. 12. 31.(1년간)

- 근무인원 : 8명

구 분	합계	시 설 관 리					
		시설관리자 (전기·소방)	보조관리자 (전기보조업무)	미화	야간시설경비		헬스장 접수
계	8명	1명	1명	3명	1명	1명	1명
경력사항	3년 이상	2년 이상	–	3년 이상		–	
자격증	전기, 소방 산업기사자격증 이상소지자	가스기능사 자격증이상 소지자	–	–		–	
근무시간	08:30~17:30	08:30~17:30	07:00~16:00	17:30~08:30	17:30~08:30	17:00~22:00	
휴게시간	12:00~13:00 (1시간)		12:00~13:30 (1시간30분)	18:30~19:30 22:30~05:30 (8시간)	18:30~19:30 22:30~05:30 (8시간)	21:00~21:30 (30분)	
근무형태	주간 주5일 근무 / 2일 휴무			월~금 주5일 근무	토~일 주2일 근무	월~토 근무	
명절 및 공휴일	명절 순환근무			무휴		휴무	

\* 경비는 설.추석 명절 및 공휴일과 상관없이 주5일(월~금), 주2일(토~일) 근무를 해야 한다.(연중무휴)

② 원가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제2장 원가분석 세부기준에 의한다.

단, 원가분석 세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체육회관 시설관리에 필요할 때에는 별도 분석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중점 분석사항) ① 원가분석자(업체)는 회관의 시설위탁관리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설계(기초)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② 원가분석자(업체)는 제반 관계 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술자격요건, 적정 관리인원, 관리업체에서 구비하여야 할 기본 장비 등에 대한 분석 및 관련 자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③ 원가분석자(업체)는 사전에 회관 및 전시관에 대한 현황파악을 충분히 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의견 및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원가분석에 임하여야 한다.

## 제2장 원가분석 세부기준

### 시설 및 설비, 조경관리

제5조(기계설비 관리) 회관의 기계설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열원설비, 공조설비, 환경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살수 설비, 자동제어 설비(기계자동제어), 소방 설비(기계분야 소방 설비) 등 기계분야 설비 전반의 기기를 운전.유지관리 한다.
- ② 기계설비는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을 실시하며 점검내용은 기록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소규모 시설보완이나 보수, 수선은 관리 업체에서 실시하고 대규모 수선은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실시한다.
- ③ 냉.난방 공급은 계절의 외부온도 조건에 따라 조절 공급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단, 에너지 절약에 따른 정부 시책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냉 방	난 방
기 간	6/1 ~ 8/31	12/1 ~ 2/28
기 준	온 도	18 ~ 20°C
	습 도	40 + 5%
	시 간	07:00 ~ 19:00

가. 냉.난방 공급기간 또는 공급 시간내에서도 정부시책에 준하여 그 기간, 시간, 실내온도 등을 제한 공급 또는 조정 공급할 수 있다.

나. 공조설비 제어는 중앙통제실에서 한다.

- ④ 회관 및 전시관의 급수는 24시간 공급한다. 단, 동절기의 온수공급은 필요에 따라 관리인이 공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전기설비 관리) 회관의 전기설비 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전기운전 업무

- 가. 수.배전 설비관리 및 조작
- 나. 승강기 및 발전, 변전설비 운전 및 점검 보수
- 다. 전등 전열 점.소등 관리, 동력 및 조명전력 공급
- 라. 수.배전실 기기 및 전선, 전선관로의 일일점검
- 마. 셔터류 점검 보수
- 바. 중앙감시반 회로조작 및 감시업무
- 사. 각 계전기 점검 및 전류, 전압상태 파악 업무

## ② 전기보수 업무

- 가. 각종 조명기구 점검 및 불량 조명시설 보수
- 나. 각종 동력, 전등, 전열배선 및 기계기구의 전열저항 측정 및 보수작업
- 다. 전기 선로 및 전열기기 사용상태 점검
- 라. 전등 동력 배.분전반 점검 보수
- 마. 전기시설물 일일 및 주.월간 점검
- 바. 각종 사무기 시설에 따른 보수 및 설비 조정
- 사. 기타 전기설비관련 점검 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제7조(기타 설비) 회관의 기타설비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매일 각종 설비를 운영, 점검, 감시하며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분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③ 각종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수 또는 부속품을 교체 개조하여야 한다.

제8조(조경관리) 조경지 및 조경시설물 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조경지 관리

- 가. 잔디제초, 시비, 약제살포(연간) : 수시
- 나. 수목병충해 방제(연간) : 수시
- 다. 조경지내 수목, 지피식물 등 생육상태 점검.관리
- 라. 수목, 지피식물 등 병충해 발생여부 예찰 및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후 조치
- 마. 고사지 제거 및 전지 작업 : 교목 연2회, 관목 연4회
- 바. 수목 지주목 상태 점검·보수 : 수시
- 사. 우천.태풍에 의한 수목 피해(도복, 부러짐 등) 여부 점검.조치
- 아. 하자기간내에는 하자사항(고사목 등)으로 통보 조치
- 자. 각종 자재.소모품 소요량 파악 및 수불 관리

### ② 조경시설물의 갈라짐, 부식, 이음부 연결상태, 도장상태 등 점검.보수

## 청소 및 방역관리

제9조(청소의 운용) 회관 및 전시관 청소는 항상 깨끗하고 쾌적하며 밝은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쓰레기 처리) ① 청사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1일 2회 이상 수거하여야 한다.

② 수거된 쓰레기는 분류하여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고 재생 불가 쓰레기는 쓰레기 처리봉투를 사용하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제11조(방역) 위생보존을 위하여 회관 및 전시관 전체의 소독을 격월 1회이상 실시하며 이때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로부터 소독실시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시설경비 등 관리

제12조(시설경비) 회관의 공익질서를 유지하고 안전 저해 요인으로부터 회관을 보호하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관리) 회관 경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회관 관리

가. 야간(18:00 ~ 익일09:00)에는 출입구 등에는 경비인력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② 회관 외곽 관리

가. 회관을 방문하는 내방객의 안내 및 안전 저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각종 조경시설 등 회관의 시설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특히, 야간에 회관의 방범활동 강화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단속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회관 인력과 연계 체계를 강화하여 필요시 인력 동원이 원활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14조(헬스장 관리) 프로그램 등록회원의 편의성 제공하고 안전 저해 요인으로부터 회관을 보호하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조치하여야 한다.

## 제3장 일반사항

제15조(관계법령 준수) 원가분석자(업체)는 원가분석 시 제반 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의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원가분석자(업체)가 진다

**제16조(대외명의 표시 및 민.형사상 책임)** ① 원가분석자(업체)는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대외적인 명의 표시는 반드시 원가분석자(업체)로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원가분석자(업체)가 진다.  
② 회관 및 전시관 원가분석결과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원가분석자(업체)에게 있다.

**제16조(업무지시)** ① 본 용역수행 작업지시서에 의한 업무지시는 문서로 하되 통상적인 것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다.  
② 본 용역수행 작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본 용역 수행과 관련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수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원가분석자(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본 용역수행 작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지시할 수 있다.

**제17조(원가분석 결과 제출)** 원가분석자(업체)는 원가분석용역 요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원가분석을 완료하고 원가분석결과보고서, 과업지시서, 기본장비 내역서, 관련근거자료 등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해결)** 부산광역시체육회와 원가분석자(업체)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19조(작업지시서의 해석)** ① 본 원가분석 용역수행 작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항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 한다.  
② 본 원가분석 용역수행 작업지시서의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와 원가분석자(업체)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작업지시서의 변경)** 본 원가분석 용역수행 작업지시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시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는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원가 분석자(업체)는 이에 따라야 하며,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시는 부산광역시체육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손해배상)** 원가분석자(업체)는 원가분석 오류 등으로 인해 부산광역시체육회에 손해을 입하게 될 경우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이와 관련한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며, 원가분석자(업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